

제301회 강서구의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간제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 3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
미 래 · 복 지 위 원 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간제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년 1월 31일
전문위원 권 오 숙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4 - 11
- 나. 발 의 자: 홍재희 의원 외 11명
- 다. 발의일자: 2024년 1월 9일
- 라. 회부일자: 2024년 1월 22일

2.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에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어린이집을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린이집의 공급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시간제보육 관련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 제2조)
- 나. 시간제보육 활성화 관련 구청장의 책무 규정 (안 제4조)
- 다.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의 지정 근거 마련 (안 제5조)
- 라. 시간제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비용 보조 (안 제6조 ~ 제7조)
- 마. 보육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의뢰 (안 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 나. 해당부서: 가족정책과
- 다. 기 타: 입법예고(2024. 1. 19. ~ 1. 23.)

5. 검토의견

가. 제정취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구청장의 시간제보육¹⁾ 서비스 제공 기관 지정이 가능함에도, 해당 어린이집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조례상 시간제보육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1) 관내 시간제보육 운영 현황

○ 2023년 운영 개요

구분	독립반(*시간제보육반 별도 편성)	통합반(*기본보육반 내 편성)
운영개소	3개소 7개반	9개소 14개반
지원시간	월 80시간	월 40시간
지원대상	6개월~만3세 미만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아동	6개월~만5세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아동
보육료	시간당 4천원(자부담 1천원)	시간당 5천원(자부담 1천원)

○ 어린이집 세부 현황

연번	명칭	소재지	정원	현원	비고
1	구립항공어린이집	남부순환로11길 81(공항동)	104	53	독립반
2	근로복지공단강서어린이집	강서로33가길 42(화곡동)	114	92	독립반
3	늘푸른어린이집	가로공원로76가길 53(화곡동)	39	29	통합반
4	달님별님어린이집	곰달래로51길 14(화곡동)	20	19	통합반
5	도토리어린이집	곰달래로51길 46(화곡동)	20	18	통합반
6	리라어린이집	초록마을로18길 36(화곡동)	74	63	통합반
7	마곡11나무햇살어린이집	공항대로 124(공항동)	45	34	통합반
8	마곡5해맑은어린이집	마곡서1로 111-11(방화동)	66	66	통합반
9	방화엔젤어린이집	금남화로 287-19(방화동)	67	54	통합반
10	새소망어린이집	강서로18길 125(화곡동)	34	17	통합반
11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수명로2길 50(발산1동)	10	0	독립반
12	해피엔젤어린이집	까치산로12길 59(화곡동)	64	48	통합반

나. 주요 제정내용

- **안 제1조**에서는 강서구의 시간제보육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 실현과 보호,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원활한 지원 및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함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간제보육 서비스”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말한다
2.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지정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시간제보육교사”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시간제보육 업무를 하는 보육교사를 말한다

- **안 제4조**에서는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동별 보육 기관 수 및 분포 등 보육실태를 참고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육기관을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제5조(기관지정) ① 구청장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배정물량 이상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지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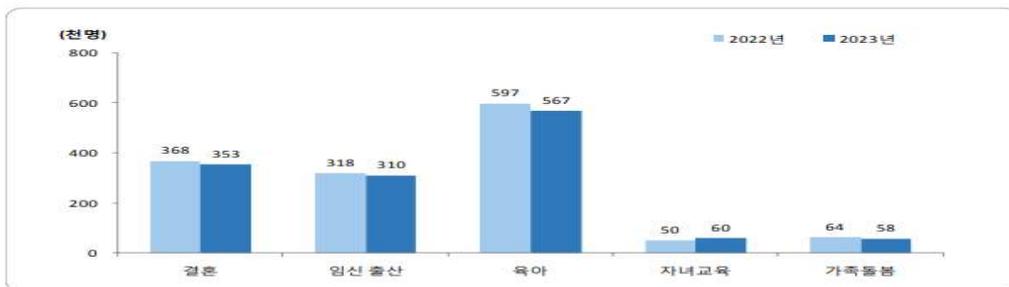
1. 동별 영유아 수 및 부모 연령 등 인구학적 가구 특성
2. 동별 보육기관 수 및 분포 등 보육실태
3. 그 밖에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

- 안 제6조 ~ 7조에서는 관내 시간제보육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보육 서비스 및 지정기관의 홍보, 보육 담당자 및 교사의 교육 지원 및 보육기관 운영에 관한 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서비스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영유아의 기본적인 보호 및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통계청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²⁾」에 따르면 15세 ~ 54세 기혼여성 794만 3천명 중 경력단절여성은 134만 9천명이며,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일)을 그만둔 사유는 육아(42.0%), 결혼(26.2%), 임신·출산(23.0%), 자녀교육(4.4%), 가족돌봄(4.3%) 순으로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줌

2) 통계청 「202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_ 경력단절 사유



(단위: 천명, %, %P)

경력단절 사유	2022년	구성비	2023년	구성비	증감	구성비
전 체	1,397	100.0	1,349	100.0	-48	-
결혼	368	26.3	353	26.2	-14	-0.1
임신·출산	318	22.7	310	23.0	-7	0.3
육아	597	42.8	567	42.0	-30	-0.8
자녀교육	50	3.6	60	4.4	10	0.8
가족돌봄	64	4.6	58	4.3	-6	-0.3

- 시간제보육은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고 일과 양육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 부모 세대에게 수요가 높은 보육 형태로, 일시적 보육 공백이 발생시 육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임
-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구청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보육 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육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종류, 지원대상, 지원방법,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

2. 어린이집

3.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간제보육 서비스지정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지급받은 보조금 및 비용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비용을 지급받았을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신체 등의 피해 보상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3(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의 사유) 법 제26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하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직원이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4. 안전, 위생,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을 폐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운영을 중단하는 등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6.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방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이용일 및 이용시간이 별표 8 제2호다목1) 본문에 따른 기준(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못미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2. 긴급 시간제보육 서비스: 긴급한 시간제보육 서비스 수요가 발생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 ②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의 영유아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영유아로 한다.

③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을 받으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

간제보육 서비스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을 신청한 사람 중 제2항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⑥ 법 제2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 관련 시설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